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정은경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숙박업을 하는 자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공중위생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21098호, 2025. 11. 11. 공포, 2026. 11. 12. 시행)됨에 따라,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숙박업을 하는 자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숙박업을 하는 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중개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7. 1. ~ 8. 1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한다.

별표 2 제1호라목1)부터 3)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”를 “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”로 한다.

별표 2 제2호가목의 근거 법조문란 및 같은 호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22조제1항제1호의2”를 각각 “법 제22조제2항제1호의2”로 하고, 같은 호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22조제2항제1호”를 “법 제22조제3항제1호”로 하며, 같은 호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22조제2항제2호”를 “법 제22조제3항제2호”로 하고, 같은 호 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22조제2항제3호”를 “법 제22조제3항제3호”로 하며, 같은 호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22조제2항제4호”를 “법 제22조제3항제4호”로 하고, 같은 호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22조제1항제2호”를 “법 제22조제2항제2호”로 하며, 같은 호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22조제1항제3호”를 “법 제22조제2항제3호”로 한다.

별표 2 제2호에 아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아의2. 법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한 경우	법 제22조 제1항	500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

별표 2 제2호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22조제2항제5호”를 “법 제22조제3항제5호”로 하고, 같은 호 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22조제1항제4호”를 “법 제22조제2항제4호”로 하며, 같은 호 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22조제1항제5호”를 “법 제22조제2항제5호”로 하고, 같은 호 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22조제1항제6호”를 “법 제22조제2항제6호”로 하며, 같은 호 파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22조제2항제6호”를 “법 제22조제3항제6호”로 하고, 같은 호 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22조제3항”을 “법 제22조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) ①법 제15조에 따라 <u>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도지사</u> (이하 “시 · 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한다. 1. ~ 4. (생략) ② (생략)	제8조(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) ①----- <u>특별시장 · 통합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생활보건팀	
연 락 처	(044) 202 - 2856